

“본 자료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문구 및 내용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스닥상장법인 정기결산 관련 투자유의사항

### 결산일정별 신고 및 공시사항(12월 결산법인)

주총6주전	주총2주전	주총1주전	주주총회일	'26.03.31'
내부결산완료 결산이사회개최	주총소집결의이사회개최	외부감사종료/ 감사보고서 수령	주주총회개최 재무제표 승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
결산실적공시 · 매출손익30% 이상 변동시 · 관리/상장폐지사유 발생시	주총소집결의 공시 주총소집통지 공고	감사보고서제출 공시 사업보고서 통지	정기주총 결과 공시	
현금배당결정 공시				

**1**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15%) 이상 변동 및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사유 발생 사실 공시

### 공시내용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영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이 직전 사업연도 대비 30%(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매출액·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자본관련 관리종목 지정,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공시시한

- 결산이사회로 내부결산 (연결)재무제표를 확정하는 날 공시
  - \* 결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공고하기 전(주총 2주전)까지는 반드시 공시

### 투자자 체크 포인트

#### ■ 매출액 규모 확인

- ①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
  -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사유발생' 공시로 확인시 30분간 매매거래정지(14:30 이후 공시 시 익일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 관리종목 지정시기: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30억원 미만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 ② 2년 연속('24년, '25년) 매출액 30억원 미만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 [Tip] 매출액 관련 실질심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된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으로 회복될 경우 매출액 추이, 주된 영업의 매출액, 4/4분기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 ■ 자본잠식 여부 및 자기자본 규모 확인

- ① 자본잠식률[(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가능**
  -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로 **확인시 30분간 매매거래정지(14:30 이후 공시 시 익일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 관리종목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사실이 확인된 날의 익일
- ② 자본전액잠식이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당**
- ③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법인이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④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이미 지정된 법인이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 ②,③,④의 경우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확인

- ① '23 및 '25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
  -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로 **확인시 30분간 매매거래정지(14:30 이후 공시 시 익일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 관리종목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동사실 발생이 확인된 날의 익일

- ② '24 및 '25사업연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
  -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공시로 **확인시 30분간 매매거래정지(14:30 이후 공시 시 익일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 관리종목 지정시기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동사실 발생이 확인된 날의 익일
- ③ 기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사업연도('25년)에 재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 5년 연속 영업손실 여부 확인

- ☞ 5년('21, '22, '23, '24, '2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가능**

## 2 주주총회소집 공고

### 공시내용

-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개최사실을 통지·공고 하여야 하며 주주에의 통지·공고와는 별개로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신고

### 공시시한

-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주전까지 통지 및 공고

### 투자자 체크 포인트

#### ■ 재무제표 확인

- ①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15%) 이상 변동이 없어 손익구조 변경 공시를 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주총소집 공고에 재무제표가 신고되므로 재무제표 특이사항 체크

\* 매출액 규모,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 손실 여부, 자본잠식, 자기자본미달,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여부 등

- ②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법인은 15%) 이상 변동 및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 내용과 주총소집 공고의 재무제표가 일치하는지 체크

## 3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

### 공시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해당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공시

### 공시시한

- 회사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공시

: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간 전까지는 공시해야 함

(ex. 주총이 목요일이면, 감사보고서 제출은 그 전 주 수요일까지)

- \* 상법 시행령 개정(21.01.01 시행)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함. 다만,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통지 등은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 가능

### 투자자 체크 포인트

#### ■ 감사의견 등 확인

- ①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됨

\*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다만 ①의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 차기 반기보고서 제출시까지 상장폐지 유예

- \* '25.07.10 이후 발생한 감사의견 미달부터는 2회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 ② 또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인 경우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비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중요한 범위제한, 검토·감사의견 표명X) 해당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④ 5년('21년~'2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 [Tip] 감사의견 등 관련 실질심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 감사의견」에 의한 환기종목 지정사유 2년 연속 발생
  - 감사의견 변경 시 (최초 '비적정' → '적정')
- ⇒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 심의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 ■ 매출액 규모 확인

- ①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 \* **감사보고서에 의해 사실이 확인된 날** 1일간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신규 지정시)
  - \*\* '26 사업연도부터 5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 지정**
- ② 2년 연속('24년, '25년) 매출액 30억원 미만시 **상장적격성 실질**

#### 심사 사유 해당

-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 '26 사업연도부터 2년 연속('26년, '27년) 매출액 50억원 미만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규모 확인

- ① 자본잠식률[(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
  - \* **감사보고서에 의해 사실이 확인된 날** 1일간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신규 지정시)
- ② 자본전액잠식이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 ③ 자본잠식률이 50% 이상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자본잠식이 50%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④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 ②,③,④의 경우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 [Tip1] 자본 관련 실질심사

자본전액잠식으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발생시(상기②)에는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6.03.31)까지 자본전액잠식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적정의견에 한함)를 제출하는 경우**

⇒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 심의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 ▶ [Tip2] 대규모 손상차손 발생관련 실질심사

최근 사업연도에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누계금액이(채권별 손상차손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실 확인시

⇒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 심의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 ■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확인

① '23 및 '25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

\* **감사보고서에 의해 사실이 확인된 날** 1일간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신규 지정시)

② '24 및 '25사업연도 연속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 초과시 **관리종목 지정**

\* **감사보고서에 의해 사실이 확인된 날** 1일간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신규 지정시)

③ 기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 사업손실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법인이 최근사업연도('25년)에 재차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10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해당**

\*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로 **확인된 시점부터 매매거래정지**

## 4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

### 공시내용

- 정기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그 결의내용을 거래소에 공시

### 공시시한

- 주주총회 개최일 당일 공시

### 투자자 체크 포인트

- 사외이사 비율 및 감사위원회 구성요건 확인

①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을 제외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비율이 전체이사 총수의 1/4 이상(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는 3인 이상 & 이사 총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에 관리종목 지정 및 사유발생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관리종목 신규 지정시)

②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코스닥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에 관리종목 지정 및 사유발생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관리종목 신규 지정시)

- ③ 다만, 주총 정족수 미달로 관리종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기업의 주주총회 성립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예외 가능**

### ▶ [Tip]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상법 제542조의11)

-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
-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 5 사업보고서 제출

### 공시내용

- 코스닥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자본시장법상 법정제출기한)
- ※ 다만,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 2주간 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하며, 1주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 가능

### 공시시한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주총 1주간전 中 먼저 도래하는 때까지 공시
-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법정제출기한은 '26.03.31. 다만, 연장신고서 제출시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투자자 체크 포인트

- 사업보고서 미제출 여부 확인
- ①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부터 사업보고서 제출시(04.10 限) 또는 '26.04.10까지 미제출하여 상장폐지 대상이 된 후 정리매매 개시 전까지 **매매거래 정지**
- ②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26.04.10)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 ③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④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날부터 최근 2년내에 동일한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의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관리종목 지정 해제**

### ■ 주식분산기준 미달 여부 확인

- ①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 다만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처리**

\*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 관리종목 지정** 및 사유발생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 ② 직전사업연도에 ①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 ▶ [Tip] 소액주주의 정의

- 소액주주라 함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 다만, 최대주주등은 소액주주에서 제외한다.
1.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투자자
  2. 「벤처기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기금
  3. 벤처금융
  4. 외국투자전문회사
  5. 투자회사
  6. 기타 보통주식 상장법인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외국기업으로서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법인

### ▶ [Tip] 관리종목 및 퇴출 회계기준 적용

-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는 법인은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
- 매출액 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 및 상장폐지는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  
- 단,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
- 자본잠식률, 자기자본10억원미만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관련 관리종목 지정·해제 및 상장폐지는 **연결(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며,  
- 자본잠식률, 자기자본10억원미만사유 적용시 “자기자본”은 비지배지분 제외

### 【 K-IFRS 전면시행후 관리종목 및 퇴출관련 회계기준 적용】

해당항목	적용기준	
	연결재무제표 제출법인	개별재무제표 제출법인
감사의견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매출액	별도재무제표 (지주회사:연결재무제표)	
자본잠식률, 자기자본10억원미만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제외)	
대규모손실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비지배지분 포함)	

\* 국제회계기준(K-IFRS)의 연결재무제표 : 종속회사의 지배지분 + 비지배지분 모두 반영

\*\* 비지배지분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